

신 회사법 시리즈 8

# 생명보험사 공개의 법리

양승규 지음





# 목 차

<b>1. 머리말</b>	<b>5</b>
<b>2. 생명보험사업과 생명보험계약</b>	<b>6</b>
보험사업의 뜻	6
생명보험사업의 주체	7
생명보험계약과 계약자배당의 문제	12
<b>3.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b>	<b>14</b>
문제의 제기	14
기업공개절차	16
주권신규상장의 요건	21
공개관계자의 책임	23
<b>4. 생보사의 주식상장과 이익배분의 문제</b>	<b>25</b>
문제의 제기	25
자산재평가차익의 분배와 보험계약자의 지위	26
배당부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	31
<b>5. 맺는말</b>	<b>34</b>
<부록 1> 연도별 계약자배당전잉여금 배분현황	36

## 훑어보기

최근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업공개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기업공개에 따른 이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생명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즉, 질병, 상해, 고도의 장애, 사망과 퇴직 등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품화하여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사전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러한 생명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는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다. 상호 회사는 사원 상호간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반면,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기업공개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생명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의 문제이다. 상호회사인 생명보험회사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기업공개를 실시해야 하며, 주식회사인 경우 증권거래법 등 법규에서 정한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공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가 없으며, 모두 주식회사이므로 법규에서 정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기업공개가 가능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기업공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즉, 주주의 이익으로 돌리느냐 보험계약자의 이익으로 돌리느냐이다. 기업공개 이익 배분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계약자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생명보험상호회사의 경우 주식과 주주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원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보험사업자이다. 사원은 회사의 설립 시에 입사청약서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 사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사원은 퇴사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보험사업자로서 사원의 지위를 차지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사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배분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이들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 무와 상법에서 규정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채권자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은 그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이러

한 분류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보험계약자가 기업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뿐이다.

현재 학자, 시민단체, 정부 등은 주식회사의 자산 중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로 적립한 타인자본이 대부분이며, 생명보험사는 상호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이익배당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기업공개의 이익을 상당한 부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사의 자산에는 보험계약자의 몫이 절대적이다. 그 이유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이 바로 보험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 초기 보험연도에서 발생하는 초과보험료의 수입을 적립하여 후기에 부족한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으로 형성된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몫이나 이를 자본으로 전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당할 수 없다.

생명보험회사는 무배당상품과 이익배당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익배당상품은 상호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주식회사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은 아니다. 이 상품의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을 해야 하며, 배당재원은 생명보험계약에서 생겨난 금리차익금, 위험율차익금, 이차익금, 비차익금 등에서 생겨난 이익금에 한한다. 배당부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채권자로서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또는 배당보험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보험사업자의 경영 성과에 대한 손익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증권거래법 등의 관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즉, 상장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기업의 공개는 허용되어야 한다. 기업 공개를 논하는데 상장이익을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느냐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를 위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당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회사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 1. 머리말

보험사업은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가진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할 수 있고(보업 5조, 6조1항)<sup>1)</sup>, 생명 보험 주식회사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균일한 금액의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상법 329조)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나뉜다.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생명보험사도 적자 경영의 늪에서 벗어나면서 1988년 11월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는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1991년에 기업을 공개하겠다는 선언<sup>2)</sup>을 하였고, 교보생명, 삼성 생명 등 공개요건을 충족한 생보사들이 기업공개에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9년 10월에 공청회 등을 거쳐 생보사의 이익배분 기준을 마련하고<sup>3)</sup> 그 공개에 대비하였으나 그 후 자본시장의 악화와 생보사의 기업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밀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결국 그 공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1997년 IMF의 한파가 몰아치고 기업의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의 부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일부 주식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그 주식의 상장과 가액평가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생보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한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로서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을 상호보험과 혼동한 데서 오는 것이고, 보험사업자의 실체보다는 그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자본수익을 주주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난날 우리의 경제구조에서 법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보험사업의 경영도 이른바 선단(船團)행정으로 우량보험사업자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제보다 적게 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회

---

1) 종래 보험사업은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1999년 5월 24일의 개정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2) 사보 대한생명, 1988년12월호 6면 참조.

3) '89 사업연도 주주.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은 책임준비금과 확정배당소요액을 우선적립한 후의 잔여이익은 주주와 계약자의 지분을 K을 100%인 경우 30%이하 70%이상, K을 50% 이상인 경우 20%이하 80%이상, K을 50%미만인 경우 10%이하, 90%이상으로 차등화하고 계약자지분으로 분류한 이익은 계약자배당재원 또는 책임준비금적립충실화(K을 상향조정)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의 법리를 어기면서 주식상장의 경우 자산의 평가로 인한 주식의 상장가치를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분배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주식회사의 법리와 보험계약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법의 원칙보다는 그때그때의 편법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려는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부패를 양산하였고,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도 법 원칙을 무시한 관치금융의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편법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의 문제도 그 주식상장의 법리와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국민정서나 여론을 빌미로 감독관청이 개입하여 그 법리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2. 생명보험사업과 생명보험계약

### 보험사업의 뜻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갖가지 사고의 위험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벅차고,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대비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인간의 이성(human mind)이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의 하나가 바로 보험이다<sup>4)</sup>. 보험은 일반적으로 위험의 전가와 분산(transferring and distributing risks)을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sup>5)</sup>.

그리하여 보험 사업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따라 다니는 갖가지 위험을 동질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 종합 평균화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각 보험계약자에게 그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특수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험사업은 위험단체를 전제로 윤리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어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같은 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이나 증권업과도 크게 다른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업은 보험제도의 성질상 어떠한 사업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sup>6)</sup>,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비록 사보

4) Edwin W. Patterson, Essentials of Insurance Law, 2d., 1957, p.3. 梁承圭, 保險法 제3판, 21면 참조.

5) Robert E. Keeton/Alan I. Widiss, Insurance Law Practitioner's Edition, 1988, p.3.

험사업자라 하더라도 준공기업(quasi-public corporation)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sup>7)</sup>, 그 영업의 개시에서 종결을 지을 때까지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는 것<sup>8)</sup>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보험업법 제1조에서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보험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에서 오는 것이고, 보험감독의 1차적인 이유는 보험계약자 즉 소비자의 보호에서 찾을 수 있다<sup>9)</sup>.

보험사업은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영위할 수 있다(보험업법 5조1항, 2항). 보험사업은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으로 나뉘고 보험사업자는 상해보험과 인보험의 재보험과 같은 특정한 보험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보험업법 10조). 여기서 생명보험사업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업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들여 이를 관리, 운영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보험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보험사업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보험재산을 운용하고<sup>10)</sup> 투자관리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는 보험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생명보험사업의 주체

국내의 보험사업자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가진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자이다 (보험업법 5조, 6조1항).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사업자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가진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이어야 하고 개인이나 조합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로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업은 그 사업의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6) 梁承圭, 앞의 책, 40면; 44 C.J.S. Insurance, 1993, p.102.

7) 44 C.J.S Insurance, p.208.

8) Patterson, op. cit., p.1.

9) 梁承圭, 앞의 책, 41면 참조.

10) 보험재산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이행의 담보가 되므로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은 그 재산운용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보업 19조, 시행령 14조-16조).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상호회사의 형태로 영위하는 생명보험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 보험주식회사와 상호회사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회사의 공개와 관련하여 뜻이 있다 할 것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1>은 각국의 생명보험회사 중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비중을 나타낸다. 대 부분의 국가는 주식회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상호회사가 생명보험사 총 44개 중 15개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31개 회사 모두가 생명보험주식회사 임을 알 수 있다.

**<표 1> 외국의 주식회사 상호회사 비중**

구	분	주식회사	상호회사
미 국	기업 수(1997)	1,511	100
	자 산	12,519 (65.2%)	6,085 (31.7%)
일 본	기업 수(1997)	29	15
	자 산	17,773 (9.3%)	172,338 (90.7%)
프랑스	기업 수(1998)	81	14
영 국	기업 수(1996)	158	19
독 일	기업 수(1996)	84	25
대 만	기업 수(1999)	31	-

\* 기업 수의 ( )은 기준연도 표시임. 삼성금융연구소 제공

### (1) 생명보험주식회사

(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뜻: 생명보험사업자로서의 주식회사는 생명보험을 영리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다(상법 169조, 171조, 보험업법 5조).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가 생명보험을 영리사업으로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출자자인 주주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험사업의 허가라 함은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독관청이 이를 해제하여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영업허가이지<sup>11)</sup>,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주식회사도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 법상의 주

11) 양승규, 앞의 책, 46면.

식회사로서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회사라는 법인을 창설하는 절차로서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서 구성된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규칙으로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289조 1항, 292조). 이에 따라 생명보험주식회사는 정관의 목적에 생명보험사업을 기재하고(상법 289조1항1호) 상호에 그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한 회사(상법 289조1항2호, 보업 8조)로서 균일한 주식으로 분할되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보험업법 6조1항, 상법 329조), 출자자인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금액을 회사에 대하여 납입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물적회사이다(상법 331조 참조).

(나) 업무집행기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회의체의 기관 이고(상법 393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상법 389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상법 382조1항)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임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보험업법 12조 참조). 이사는 대표이사는 물론 비업무담당이사라도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회사와의 사이에 위임관계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진다(상법 382조2항, 382조의2). 따라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상법 399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401조).

(다) 주주의 지위: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뿐이고,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때에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401조의2 참조). 그리고 주주는 회사에 영업상 이익이 있을 때에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462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의 소유자로서 비록 기업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상법 361조 이하)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의

선임,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상법 382조, 385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의 승인권(상법 449조) 등을 가지고 또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권(상법 376조, 380조, 429조, 445조, 529조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한도에서 이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주주권자는 이사의 해임청구권 (상법 385조2항),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상법 402조, 403조) 등의 행사로 이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 (2) 생명보험상호회사

(가) 생명보험상호회사의 뜻: 생명보험사업자로서의 상호회사는 사원 상호의 생명보험을 영위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 원회로부터 생명보험사업의 허가 받은 자이다. 즉 생명보험상호회사(Mutual Life Insurance Company)는 주식과 주주가 따로 없이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보험사업자이고<sup>12)</sup>, 이는 상법상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이다(보업 51조, 상법 171조). 그러나 생명보험상호회사는 생명보험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원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양자를 겸하는 협동조합(co-operative enterprise)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sup>13)</sup>.

(나) 상호회사의 설립: 상호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준하고 있다. 즉 상호회사도 3인 이상의 발기인(보험업법 51조, 상법 288조)이 정관을 작성하여(보험업법 41조) 설립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보험업법 51조, 상법 292조). 정관의 기재사항 가운데 보험의 종류와 사업의 범위는 생명보험사업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명칭에는 생명보험상호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42조). 기금의 총액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보험업법 6조1항), 이 기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어 자기자본을 구성하나, 기금은 사업자금으로서 회사의 부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정관에는 기금의 각출자가 가질 권리와 기금의 상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41조5호, 6호).

발기인은 기금인수인을 확정하여 지체 없이 기금을 금전으로 납입하도록 하여야 하고(보험업법 43조, 상법 295조1항, 305조) 납입금보관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증명을 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등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보업 43조2항, 상법 318조). 그리고 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는데(보업 44조),

12) Kenneth Black, Jr. Harold D. Skipper, Jr. Life Insurance, 11ed., 1987, p. 503.

13) 44 C. J. S. Insurance, p. 237.

발기인이 아닌 자가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설립 시에는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보업 45조).

기금의 납입이 완료되고 또 사원이 예정 수에 이른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설립경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사,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절차를 밟아야 한다(보업 46조). 그리고 창립총회를 종결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보업 47조, 48조), 이 설립등기에 의하여 상호회사는 성립된다.

(다) 업무집행기관: 생명보험상호회사도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집행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은 주식회사의 이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보업 66조2항, 3항). 그러므로 상호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이원화하고 있다.

(라) 사원의 지위: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는 달리 보험계약자이다.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설립시에는 입사청약서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여 청약하게 되나, 회사성립 후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회사가 승낙하면 사원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보업 45조1항). 다시 말하면 상호회사의 사원관계는 보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사원은 퇴사하게 된다(보업 73조 1항 2호)

이에 따라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짐은 물론 사단법인의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즉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보업 53조, 54조). 그리고 사원은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보업 62조)을 비롯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 (보업 46조3항, 66조, 81조 참조).

보험계약자인 사원은 보험회사가 예정보다 사고율이 낮고 비용지급이 적어 경영성과가 좋은 때에는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의 분배를 받게 된다(보업 70조). 이것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상법 462조)에 비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경영성과가 좋지 못한 때에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보험금액의 삭감(보업 56조)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생명보험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서의 보험계약자의 지위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는 생명보험을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이고, 상호회사는 그 직원들의 보험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업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채권자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이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은 그 회사의 사원인 주주에게 귀속한다. 이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로서 동시에 사원의 지위를 차지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 고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분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영리보험이든 상호보험이든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효율적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합리적인 보험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자는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호보험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상법 664조), 영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배당부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호보험에 접근하는 현상도 나타나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의무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보험의 경우 배당부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사차익(死差益) 등의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보험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의 분배에 참여할 수 없는 점에서 상호회사의 보험계약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생명보험계약과 계약자배당의 문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이다(상법 730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보험사고가 생길 때에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 보험과는 다르다. 생명보험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도 국민의 경제보장장치(economic security device)로서 보다 큰 역할을 맡고 있다<sup>14)</sup>.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므로 상해나 질병은 생명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뜻하지 아니한 사고로 신체상의 손상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보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약관에서 질병이나 상해를 추가로 담보하는 특약을 붙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보험을 폐질 또는 재해추가담보보험이라 하고<sup>15)</sup>, 오늘날 거의 모든 생명보험약관은 이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Black/Skipper, op. cit., p. 35.

15) Edgar Hofmann, Privat-Versicherungsrecht, 3 Aufl., 1991, S. 253., 양승규, 앞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므로 생사혼합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는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사망시기가 불확정할 뿐 한번 죽어야 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손해보험과는 다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유족의 생활 보장 또는 생존시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이용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고, 보험의 보장적 기능 이외에 저축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생명보험은 그 보험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므로 그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된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 등이 실제보다는 높거나 낮게 책정되어 예정률과 실적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상호 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말에 보험계약자인 사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게 되고 (보업 70조), 만일 손실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보험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보업 56조). 그러나 영리보험에서는 보험사업에서 생기는 손익은 보험사업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상법 730조),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환급금과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이른바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줄 의무를 진다(상법 649조3항, 736조).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의 구조에서 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사차익 등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리생명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7)</sup>.

생명보험표준약관 제52조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린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을 한다는 정함을 둔 보험을 이익배당부생명보험이라 하고, 이익배당에 관한 정함을 두지 아니한 보험을 무배당생명보험이라 한다. 그러므로 무배당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의 문제는 생겨나지 아니하고, 다만 이익배당부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사 업자는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익 배당의 재원은 그 생명보험계약에서 생겨난 금리차익금, 위험율차익금, 이차익금, 비차익금 등에서 생겨난 이익

---

책, 450면 참조.

16) 양승규, 앞의 책, 444-445면 참조.

17) 프랑스보험법전 L.132-29조는 “생명보험사업자는 경제, 재정부령 소정의 조건으로 실현하는 사차익, 이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에 한하는 것이지 회사의 영업 전반에 걸친 영업이 익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한다<sup>18)</sup>.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 여부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과대포장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모집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제155조제3항은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사업자의 이익의 배당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보험상품에 의한 배당이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는 불확실한 것이므로 미리 보험모집시에 예상배당을 밝히는 것을 금지한 것이고,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거의 배당실적 등을 기재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영리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이익배당부보험에 한하여 그 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에서 사차익 등 이익이 생긴 때에 행해지는 것이고, 그 보험계약상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무배당보험계약의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업자에게 영업상의 이익이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그 재원으로 삼아 이익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의 문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3.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

#### 문제의 제기

기업의 공개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 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2조8항)<sup>19)</sup>. 즉 기업공개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공개적인 증권시장을 통해서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출함으로써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권상장법 인과

18) 보험감독규정(1999. 3.26.개정) 제77조5항 참조.

19)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이하 ‘인수규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4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4. 1.에 제정한 것으로 1999. 11. 3.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나누는데<sup>20)</sup>, 주식회사가 기업을 공개하면 그 주식이 광범하게 분산되고,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공개회사가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자본의 수요가 늘어날 때에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유가증권발행의 공정성과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증권거래법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조는 증권거래의 공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들고 있다<sup>21)</sup>.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는 바로 그 생보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업은 개업초기를 제외하고는 보험모집에 의하여 축적된 보험자산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공개에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은 물론 손해보험주식회사의 경우 모두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보사의 공개를 막을 이유는 없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0년대 초에 생보사의 공개허용방침을 이미 세웠고, 삼성생명보험사와 대한교육생보사가 그 공개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나 그 후 자본시장의 사정으로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공개가 미루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생명보험주식회사도 채권자에 대한 담보는 회사의 자산이고, 보험금 지급능력 의 확보를 위하여 자본의 충실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생보사의 경우도 어느 정도 대형화하여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소수의 주주에 의한 기업지배보다는 그 주식을 공개하여 수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공개요건을 갖추어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절차를 밟아 이를 추진하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효용성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

20) 증권거래법 제2조13항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비주권상장법인으로 나누어 그 개념을 정하고 있다.

21) 미국에서 증권거래에 관한 규제는 투자자의 보호, 사기와 조작의 관행(fraud and deceptive practices)의 방지 및 증권산업에서 고도의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들고 있다(79A C.J.S. Securities Regulation, 1995, p.33). 미국법의 이러한 규제목적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표 2〉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조직형태와 기업공개 현황

구분	주식회사		상호회사	기타	계
		상장회사			
미국	1,511	31	100	9	1,620
일본	29	-	13	2	44
영국	217	13	25	-	242
대만	16	2	-	15	31

기타: 국영 및 지점형태

### 기업공개절차

주식회사가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주식을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주주를 모집하거나 주권을 매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주권을 시장에 내놓을 때에는 주식의 시장조작(manipulation)을 방지하고 가격의 안정을 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22)</sup>. 증권거래법은 기업을 공개하고자 하는 회사의 등록과 그 등록서류의 공시를 통해서 일반대중이 미리 기업을 공개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개요건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증권을 공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생명보험주식 회사의 공개도 이에 따라야 하므로 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상장규정<sup>23)</sup>과 인수규정을 중심으로 그 기업공개절차 가운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들어 소개하기로 한다.

주식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먼저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증권거래법 3조1호). 등록서류는 회사의 개황, 재산상황 등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이고(증권거래법 4조), 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5조). 따라서 위원회는 등록 법인에 대하여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건전한 경영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6조). 이와 같이 증권거래법이 주식회사의 공개를 위하여 등록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개입시키는 것은 우선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등록법인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및 경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sup>24)</sup>.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할 것이다.

22) Louis Loss/Joel Seligman, Securities Regulation IX, 3d, 1992, p.3988 참조.

23)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88조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정한 것이다.

24) 辛永茂, 證券去來法, 1988, 187면.

## (1)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신규상장신청인으로서 증권거래소에 그 주권의 권종별견양,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 일정한 서류<sup>25)</sup>를 첨부한 주권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상장규정 4조). 거래소는 그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내에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예비상장심사결과를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상장규정 4조의2).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지한 후에도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청구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 등이 발견되어 예비상장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비상장심사 결과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그 효력을 부인 한 때에는 다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상장규정 4조의3).

## (2) 주간사계약의 체결

주권을 상장하고자 등록한 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간사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간사회사는 주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 등을 통할하며 기타 인수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이다(인수규정 2조10항)<sup>26)</sup>. 그리고 신규상장신청인은 예비상장심사청구 등 신규상장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장주선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상장주선인은 주간사회사이어야 하고<sup>27)</sup>, 상장주선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계약서사본을 예비상장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상장규정 4조2항9호).

주간사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간사계약을 체결하고<sup>28)</sup>,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인수규정 22조). 그리고 간사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하여 인수하는 주식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분석기

25) 상장규정 제4조2항은 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목록 12가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6) 간사회사는 금감위로부터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출을 허가받은 증권회사(증거 28조)나 증권투자신탁회사(증투신법 9조) 등으로 제한되고, 발행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는 주식인수를 위한 간사회사가 될 수는 없다(인수규정 8조).

27) 상장규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3항에서는 상장주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주권의 신규상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8) 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은 발행회사와 인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유효한 계약, 즉 사전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구인수규정25조1항). 발행회사의 경영관리실태등에 대한 자료 확인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재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인수대상주식 등의 요건의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하고(인수규정 16조1항, 17조) 그 주식의 인수가액은 주간사회사가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가액으로 한다(인수규정 19조1항). 여기서 수요예측이라 함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수회사가 그 기업의 본질가치, 상대가치 및 사업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인수규정 2조12항).

이와 같이 공개를 위하여 주간사회사를 선정하여 간사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은 공개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영실태, 재무구조 등에 대하여 증권전문가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받아 건전한 기업의 공개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할 것이고,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서에 주간사회사가 작성한 주식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상장규정 4조2항6호).

### (3) 감사인에 의한 감사

기업을 공개하고자 하는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재무제표의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으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된다. 감사인은 최근 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예비상장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상장규정 4조2항5호).

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감사인은 대차대조표의 숫자상의 정확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정관에 기재된 특별한 사항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느냐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지고 있다<sup>29)</sup>. 기업의 공개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회계처리의 공정성 내지는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인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감 5조). 그러므로 감사인은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 감사 기준에 따라 그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9) Digby Charles Jess, A Guide to the Insuranc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isks, 1982, p.23.

#### (4) 정관의 개정

정관은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이다. 상법은 주식회사를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는 공개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관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1995년의 개정상법은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제335조 제1항단서)라고 규정하여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장회사 내지 공개회사는 성질상 이러한 제한을 허용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sup>30)</sup>.

그리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상법 418조제1항)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의 공모를 위하여 이를 배제해야 하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대리인(상법 337조2항)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그 예이다(상장규정 4조2항8호 참조). 그러므로 기업을 공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공개에 걸림돌이 되는 정관의 규정을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상법 434조) 개정 내지는 신설하여 이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 공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 (5) 주권의 신규상장신청

주식회사의 공개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유가증권시장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다(증거 2조12항). 그러므로 회사가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보받고 그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소 소정의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의 예비상장신청 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주금납입기일을 말한다) 후 1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장규정 4조의4 제1항, 3항). 거래소는 그 상장신청서를 검토하고 신규상장신청일부 1주내에 신청인에게 신규상장승인 여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2항). 거래소가 생명보험 회사의 주권신규상장을 승인한 때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생보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

30) 상장규정 제15조1항 11의2호는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의 하나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제한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다.

## (6) 주권매출신고

주권을 상장하여 매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그 주권의 매출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주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매출을 할 수 있다(증거 8조1항, 시행규칙 2조). 발행인의 매출신고는 주권의 매출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증거 9조, 시규3조1항1호). 그러나 이 신고의 효력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주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 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증거 9조2항).

매출신고서에 기재할 사항과 첨부 서류는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 밖에 발행인의 미래의 재산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1.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 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이상의 예측정보에 관하여 발행인으로부터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가 당해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기재할 수 있는데, 이는 예측정보로서 예측 또는 전망에 의한 것으로 그 예측치와 실제의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증거 8조2항, 14 조2항1호, 2호, 4호).

## (7) 사업설명서의 작성, 비치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은 사업설명서(事業說明書)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의 본점, 지점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 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증거 12조, 시규 4조). 사업설명서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시규 3조의5)<sup>31)</sup>.

그러므로 사업설명서에는 1. 회사의 개황, 2. 사업의 내용, 3. 재무에 관한 사항, 4.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투자자가 이를 열람하고 회사의 사업의 전망이나 재무구조 등을 예측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주식에 관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31)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사용하는 예비사업설명서의 작성이 인정된다(증거 13조단서, 시행규칙 4조의2 참조).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증거 13조1항).

이와 같이 주주의 모집 또는 주권의 매출에 있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를 받아들인 것이다. 즉 이것은 그 주권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매매에 앞서 투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정보의 공시를 촉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sup>32)</sup>.

### 주권신규상장의 요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제1항은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14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제2항 이하에서는 일반요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업공개요건으로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주식회사의 설립 후 5년이상 경과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1호). 이것은 회사설립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해야 그 동안의 영업실적 등을 참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가 3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2호). 여기서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상법 451조), 자기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 이외에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준비금(상법 458조, 459조)을 합한 금액으로서 자기자본이 충실한 기업이 거래의 대상 주식수를 충분히 갖춘 때에 공개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2의2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그 매출액은 연간 보험계약고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부채비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하되, 동업종의 주권상장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전 상장법인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금융업, 보험업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호가).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의 공개를 위하여는 부채비율을 문제 삼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보업 98조)은 부채계정에 속하고 이는 매 결산기마다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납입자본이익률: 최근 3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 순이익이

32) 79A C.J.S. op.cit., p.58., 金建植, 美國證券法, 1996, 63면 참조.

있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25% 이상으로서 최근 3 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 합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4호-나).

(다) 자본충실: 최근 사업연도말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4호-다). 자본잠식은 경영의 악화로 손실이 가중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므로 자본잠식이 있으면 기업공개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의 3배를 초과하고, 수익가치가 액면가액의 2배를 초과하여야 한다(4호라). 이것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여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표시되는 자본(상법 451조)보다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훨씬 높아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한정의견 포함)이어야 한다(5호).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외감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증거 193조의3, 시령 84조의25제3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감사인(외감 3조)의 감사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회사가 업무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한 것이 재평가적립금이다(동 28조1항). 이러한 재평가적립금은 이를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는데(동 28조2항2호),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가. 자본에 전입한 총액이 그 청구서의 제출일부터 3년 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의 30% 이하일 것, 나. 자기자본이 자본전입 후의 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다. 자본에 전입한 총액이 그 청구서제출일의 2년 전의 날 현재의 재평가적립금과 그 이후에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0% 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9호).

상장규정 제15조는 주식의 분산요건(3호), 부도발생사실(6호), 소송 등의 계류 (7호), 합병 등(8호), 준비금의 자본전입(9의2호), 유상증자(10호),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 비율변동제한(11호), 주식양도의 제한(11조의2), 명의개서대행위탁(12호), 통일규격주권(13호), 그 밖에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경영안전성, 성장성 및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없을 것(14호)을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으로 들고 있다.

## 공개관계자의 책임

기업의 공개에 관여한 자는 그 기업을 공개한 회사는 물론 간사회사와 감사인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간사회사는 간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할 뿐 아니라 주식을 분석하고(인수규정 16조1항, 17조) 그 주식의 인수가액의 결정에 참여한 자이고(인수규정 19조1항), 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이다. 이에 따라 간사회사와 감사인은 공개를 하고자 하는 회사의 영업실태나 재무구조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들의 의견이 그 회사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증권거래법 제14조는 신고서의 부실기재 등을 이유로 책임을 지는 공개관계자로서 1.주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그 법인의 이사, 2.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3. 주권발행인과 그 주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4. 그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5.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되는 주권의 소유자를 들고 있다.

### (1) 공개관계자의 손해배상책임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기업공개에 관여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증거 14조 본문). 그리고 감사인이 가령 재무제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한 감사인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증거 197조제1항, 외감 17조2항). 이것은 회사가 주식을 공개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령 사업설명서의 작성을 부실하게 하고, 분석이익을 계상하는 등 그 요건을 허위로 조작하여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그 주식의 공개에 관여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주식취득자의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진다고 풀이한다(민법 제760조)<sup>33)</sup>.

이와 같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에 허위기재 등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한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인 목적 뿐 아니라 순진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무모하고 사기적인 증권의 매도인에게는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4)</sup>.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33) 79A C.J.S. op.cit., p.69 참조. 34) 79A C.J.S. op.cit., p.63.

34) 79A C.J.S. op.cit., p.63.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나 표시가 빠진 사항 등이 중요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중요성(materiality)은 보통의 신중한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기전에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또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사항의 뜻으로 새길 수 있다<sup>35)</sup>.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허위의 기재사실 등을 신뢰하였느냐의 여부 또는 그것이 그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는 배상의무자의 책임요건이 아니다<sup>36)</sup>.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그 주식취득자가 실제로 지급한 주식가액에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증거15조1항)라고 규정하여, 그 주식취득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 (2) 배상의무자의 면책

배상의무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사실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주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시에 그 허위의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증거 14조1항 단서). 이것은 가령 전문가에 의한 주식의 분석이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사업설명서를 작성, 교부한 자와 같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근거서류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를 들 수 있고<sup>37)</sup>, 취득자가 허위기재를 안 때에는 그는 악의취득자로서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예측정보의 기재는 가정적이고 그 예측치와 실제의 결과치가 다를 수 있음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때에는 주권의 취득자가 청약 시에 그 예측정보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개관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관여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증거 14조2항).

## (3)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효

주권공개관계자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증거 16조).

35) 79A C.J.S. op.cit., p.110; 辛永茂, 앞의 책, 233-4면.

36) 79A C.J.S. op.cit., p.111.

37) 미국의 1933년의 SEC.11(b)참조.

## 4. 생보사의 주식상장과 이익배분의 문제

### 문제의 제기

생명보험주식회사가 기업의 공개요건을 갖춰 공개절차를 밟아 증권거래소에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을 하여 그 승인이 나면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공개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높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회사가 공개하여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에 따라 주주가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공개를 위하여는 주권상장생보사가 주권을 분석하여야 하고(인수규정 16조1 항), 그 주식의 인수가액은 주권상장생보사가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 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인수규정 19조1항). 그러므로 주식의 시가는 주권상장생보사의 자산 가치와 수익가치 및 그 주식의 수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그 인수가액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여기서 가령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이 공개하여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시세차익으로 주주가 받게 될 이득을 보험계약자에게도 돌려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보사의 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상호회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도 주권을 배당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주장은 결국 미국, 영국 등에서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주권을 배당한 것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sup>39)</sup>,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비록 이익배당부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호회사의 보험계약자는 동시에 사원의 지위를 가지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채권자이지 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리적으로는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와 관련하여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한 분배를 논할 이유는 없으나 이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실정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자산재평가적립금과 이익배당부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배당의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38) 松尾逸朗, 株式會社化時の剩餘分配に關する法的問題, 生命保險經營 66卷 6號, 1998, 124면 이하 참조.

39) 한국금융연구원이 1999. 8. 20.과 1999. 12. 13.에 실시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 자산재평가차익의 분배와 보험계약자의 지위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생명보험주식회사도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과 이익준비금(상법 458조) 또는 자본준비금(상법 459조)으로 구성되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으나, 타인자본의 구성은 일반회사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고 있다. 보험사업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아들여 이를 관리 운영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 계약에 따라 장래 생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등이 타인자본에 속한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1조는 보험사업자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등 한국금융연구원이 1999. 8. 20.과 1999. 12. 13.에 실시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오늘날 생명보험상호회사가 탈상호화(Demutualization)의 현상으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Union Mutual Life Insurance Co.가 1986년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사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일률적으로 배당하는 부분(일률부분)과 각 사원의 재산적 공헌에 따라서 배당하는 부분(변동부분)으로 나누어 배당하였고, 영국, 호주에서도 상호회사의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주식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하여야 하고(보험감독 규정 77조1항), 이는 대차대조표의 부채에 기재된다<sup>40)</sup>.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영업에서 생긴 이익 가운데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 금액이고(상법 458조),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초과금액 등을 적립한 금액(상법 459조)이므로 회사의

40) 보험감독규정 제74조(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 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 조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개정 98. 7. 24, 99. 3. 12>

자기자본에 속하나, 보험업법상 적립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채무<sup>41)</sup>, 즉 타인자본에 속한다. 그러므로 보험사업자는 책임준비금에 상계할 수 있는 자산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보험 자산에는 이러한 책임준비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1)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주주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상법상 자산의 평가는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하고(상법 31조2호), 대차대 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작성된다(기업회계기준 62조).

그리하여 기업의 고정자산이 물가의 상승으로 그 가격이 높은 데도 이를 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현상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가공의 이익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경제구조의 변화와 가격상승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자산재평가법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고(동 1조), 업무용 고정자산을 재평가자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동 5조). 이에 따라 회사가 업무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자산의 시세차익으로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하고도 잔액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적립한 것이 재평가적립금이다(동 28조1항). 기업이 업무용 고정자산의 재평가에 의하여 생긴 차익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이를 회사의 영업상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바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은 재평가적립금은 ① 재평가세의 납부, ② 자본전입, ③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재평가하여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기업회계상으로 보면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과 같이 그 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하게 된다.

---

41) Black/Skipper, op. cit., p. 346. 책임준비금은 이익준비금(surplus)과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상법상의 이익준비금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그 보험자산은 타인자본인 보험료적립금 등 책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재평가적립금을 모두 자기자본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은 재평가적립금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자산 재평가적립금에는 주주의 몫 이외에 보험계약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업자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1989년부터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가 제기되었고, 당시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의하여 기업을 공개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세제특례를 부여하여 재평가 후 2년내에 상장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였다<sup>42)</sup>.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1989년 1월에, 삼성생명이 1990년 2월 1일에 각각 기업공개를 전제로 부동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부장관은 1990. 8. 31.에 “생명보험회사 잉여 금 및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을 시달하여<sup>43)</sup> 재평가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처리후의 잔액은 유보하도록 하였다(지침 11조).

K율<sup>44)</sup>이 100% 이상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30% 이하로 하고, 계약자지분을 40%이상 70% 이하로 한다. K율이 50%이상 100% 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20% 이하로 하고, 계약자 지분을 40%이상 80% 이하로 한다. K율이 50% 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10% 이하로 하고, 계약자지분을 40%이상 90% 이하로 한다. 여기서 주주지분은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적립되어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평가적립금의 4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한 것은 주식회사의 자산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것이고, 보험자산에는 책임준비금 등 보험계약자의 몫이 있으므로 지급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를 계약자의 지분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지 그 미실현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다<sup>45)</sup>.

---

42) 조세특례제한법의 4차례 개정에 의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의 법인세면제기간을 11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0년 3월 31.까지, 삼성생명은 2001년 1월 31일까지 기업을 공개하여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3) “이 지침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는 1989년 1월1일 이후 자산재평가실시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44) 이 지침에서 “K율”이라 함은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서 추가로 더 적립한 금액”을 “순보험료식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차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지침 3조)

45) 이근창 교수는 “90년에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국내보험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정부와 보험사 모두가 인정한 것

따라서 계약자지분은 부채로서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는 없고, 공익사업재원, 계약자에 대한 특별배당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sup>46)</sup>. 이와 같이 정부가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률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주주지분을 낮게 책정하고 계약자지분을 높게 한 것은 결국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현행 보험감독규정 제81조가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전문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제8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① 생명보험사업자는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 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의 40% 이상 90% 이하를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고 주주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 후 잔여액은 유보한다.

지급여력비율이 8% 이상인 생명보험사업자 : 15% 이하  
지급여력비율이 4% 이상 8%미만인 생명보험사업자 : 12.5% 이하  
지급여력비율이 4% 미만인 생명보험사업자 : 10%이하

② 제1항의 주주지분은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계약자 지분 중 3분의 1이상을 재평가일 1일전 현재 2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계약의 만기 또는 환급시에 당해 계약자에게 특별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계약자지분중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의 2분의 1이상을 계약자배당안정 화준비금으로 계리하고 매 회계연도의 계약자 배당시 직전회계연도 수준의 계약자 배당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자배당으로 사용한다. 계약자지분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의 잔여액은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하고 매년 동 금액에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총자산수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공익사업출연금”이라 한다)을 공익사업재원으로 출연 하며, 매년 출연하는 공익사업 출연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출연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

임”(한국금융연구원,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1999. 12. 13. 공청회발표문, 7면)이라고 하고 있으나, 보험자산의 특수성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자기자본으로 적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46) 동 지침 제12조, 제13조 참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처리후의 잔여액은 자본계정에 계리하며 이 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보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 인가신청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 보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제3항제1호에 의한 특별배당금의 지급과 동항 제3호에 의한 공익사업 출연은 보험사업자가 자본전입을 시작한 회계연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감독규정 제81조는 1990년의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 비하여 주주의 지분을 낮춰 15%에서 10%로 조정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1항, 2항), 계약자의 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특별배당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공익사업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항). 그러나 자산재평가차익금은 그것이 유동자산이 아니고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으로서 미실현이익에 속하므로 이를 공익사업출연금으로 사외유출하는 것이 과연 보험경영정책과 관련하여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 (2)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재평가적립금은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자산재평가법 28조2항2호). 이것은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자기자본으로서 적립금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 적립금에서 주주의 지분에 한정되고, 계약자지분은 회사의 채무로서 이를 자본으로 전입할 수는 없다.

회사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 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461조 참조).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주식을 배당받을 수는 없고, 보험계약자가 특별배당을 받는 경우 이를 출자하여 주식을 사거나 신주 발행 시에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할 것이다.

## 배당부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

생명보험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보험사고로 하는데, 연금보험과 같이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 보험 및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보험사업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보험계약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들여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위험단체 안에서의 보험사고의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산정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공평하게 분담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서는 보험단체를 통해서 수지상등의 원칙 또는 급여와 반대급여균형의 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손해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짜여져 이를 영업보험료라 한다. 여기서 순보험료는 보험단체의 구성원에게 생길 보험사고의 발생율을 바탕으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재원이 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모집비용 또는 계약의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므로 보험료는 경험생명표의 생존율과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예정사망률과 금리를 고려한 예정이율을 기초로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산정하여 예정사업비를 부가보험료로 붙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키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사망보험금 또는 생존보험금 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 (1) 이익배당부보험과 보험계약자배당

(가) 이익배당부생명보험의 뜻: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산정의 기초인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는 실제보다는 높거나 낮게 책정되어 예정률과 실적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보험계약의 운영결과에서 손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상의 손익은 상호보험의 경우에는 사원인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나, 영리보험의 경우에는 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보험경영에서는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영리보험에서도 영업의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이익배당부 생명보험이고, 보험약관에 그 뜻을 규정하고 있다. 영리생보사가 배당부 보험을 판매하느



나 아니냐는 영업정책의 문제이지 이로 말미암아 주식회사가 상호회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sup>47)</sup>.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는 보험약관에 “배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배당부생명보험계약의 형태로 보험사업이 영위되어 오다가 1992. 8.에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무배당보험의 비중은 매우 적다.

(나) 이익배당의 재원과 성격: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상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이외에 보험사업자가 그 보험계약의 운용에서 생긴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익배당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의 보험사업의 결과 생기는 차익, 즉 사차익(死差益), 이차익(利差益) 및 비차익(費差益)에서 나오는 이익이 그 재원이다. 이러한 차익을 보험료와의 관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 추이

구분		FY'1992	FY'1992	FY'1992	FY'1992	FY'1992	FY'1992	FY'1992	'99.4~9
책임 준비금 기준	삼성	0.1	0.7	1.6	2.4	3.1	4.8	7.9	10.0
	교보	0.1	0.5	1.4	2.0	2.4	4.5	6.7	9.0
	업계 평균	0.1	0.4	1.0	1.8	2.5	6.4	8.5	9.3
수입 보험료 기준	삼성	0.3	2.3	4.2	4.3	5.0	7.4	13.3	22.8
	교보	0.3	2.0	3.7	4.0	3.7	8.5	13.9	26.9
	업계 평균	0.3	1.8	2.9	3.4	4.6	12.4	14.9	22.3

한국금융연구원 1999.12. 공청회자료에서 인용

사차익은 예정사망율보다 실제로 피보험자의 사망율이 낮아 생기는 이익으로서 과거의 경험생명표에 나타난 사망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의학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익이다. 이차익은 생명보험계약이 장기에 걸치고 있으므로 향후의 금리수준을

47) 미국 뉴욕주 보험법 제4231조는 보험주식회사의 잉여금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f) (1)은 “주내 생명보험주식회사는 뉴욕 주에서 배당보험(participating policies)과 무배당보험(non-participating policies or contracts)의 양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주의 또는 외국 생명보험주식회사는 감독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뉴욕 주에서 배당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뉴욕 주의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우 배당보험이든 무배당보험이든 하나를 선택하여 판매할 수 있고,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 보험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배당보험의 판매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낮게 책정하고 투자수익률이 예정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이익 이고, 비차익은 보험사업자가 예정사업비를 절감하여 생기는 차익이다. 이러한 차익은 보험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에서 각 예정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의 산정을 안정적으로 하여 보험사업경영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데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차익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재원이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결과 그 차익이 없을 때에는 비록 배당부생명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생명보험주식회사가 미리 예정한 영업보험료가 실제로 보험사업의 결과로 생긴 보험비용의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또는 안정적으로 책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영업상의 이익을 주주와 함께 배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사의 영업수익이 생기면서 80년대 이후 보험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다.<sup>48)</sup>

(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 배당부생명보험계약에서 사차익은 피보험자의 사망율이 예정사망율보다 낮은 데서 온 것으로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차익이나 비차익은 보험사업자의 경영성과도 한몫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부보험계약의 영위에서 온 차익을 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생명보험약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표준약관 5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감독규정 제77조제5항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율차배당준비금, 이차배당준비금, 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동 제6항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감독규정 제78조제1항은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처리에서 생명보험사업자는 매 회계연도말에 당해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 즉, “계약자배당전잉여금” 가운데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직전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8% 이상인 생명보험사업자: 15% 이하, 지급여력비율이 4% 이상 8%미만인 생명보험사업자: 12.5% 이하, 지급여력비율이 4% 미만인 생명보험사업자: 10%이하로 처리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48) 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이에 따라 유배당보험이익의 보험계약자 지분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차등이 있고, 그 계약자 지분은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3항). 그리고 주주지분은 법인 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2항), 이 경우 주주 배당은 지급여력비율이 4%이상인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항).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나라는 배당보험의 이익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 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각 나라의 보험시장의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성질의 것이지 어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옳으냐는 획일적으로 논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감독규정 에서 배당 보험이익을 주주와 보험계약자가 지분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보험료에 의 하여 형성 되는 보험자산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보험계약자에게 상호보험의 사 원과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 5. 맺는 말

생명보험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서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생명보험사업은 보험사업자가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질적인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받아들이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경영과 자기자본 이외에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형성된 보험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공익사업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업은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생명보험주식회사는 그 자본이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자본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므로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채권자이지 회사의 영업에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주식회사가 공개요건을 갖춰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주가의 시세차익으로 자본이득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몫이지 보험계약자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더욱이 감독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상장이익을 주 주와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도록 개입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생보사 의 경영이 상호회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그 상장이익을 분배하여야 한 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은 불확정한 사고로 생길 경제적인 손실을 단체를 구성하여 개인이 그 단 체에 위험을 전가(transfer of the risk)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손실을 분담

(sharing of losses)하게 하는 제도<sup>49)</sup>이고 생명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영리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한 자로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지 보험사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원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또 배당보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호회사의 보험계약자와 같이 회사의 경영위험을 공유한다든가 주주와 같이 이익배당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리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채권자로서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또는 배당보험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보험자산 가운데 책임준비금 등으로 형성된 부분은 언제나 계약자의 몫이나 이를 자본으로 전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보험제도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를 상호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법리를 원용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당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사의 주권상장도 증권거래법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상장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주식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의 회계처리가 기업 회계기준은 물론 보험회계규정을 지키고 그 자산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감독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론을 빌미로 그 권한을 넘어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49) Black/Skipper, op. cit., p. 13.

<부록 1> 연도별 계약자배당전잉여금 배분현황(삼성, 교보)

□ 삼성

구분	배당전손익					계약자배당				당기순이익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이차	사차	이익배당 준비금	계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CY'1957					0									0
CY'1958					0									0
CY'1959					0									0
CY'1960					△ 0.5									△ 0.5
CY'1961					△ 0.6									△ 0.6
CY'1962					△ 0.7									△ 0.7
CY'1963					0.1									0.1
CY'1964					0.1									0.1
CY'1965					△ 1.2	0.6			0.6					△ 1.2
CY'1966					0.1	2.4			2.4					0.1
CY'1967					△ 0.1	3.7			3.7					△ 0.1
CY'1968					△ 0.4	5.0			5.0					△ 0.4
CY'1969					△ 0.3	2.8			2.8					△ 0.3
CY'1970					△ 0.2	3.9			3.9					△ 0.2
CY'1971	3	2	△5	0	△ 0.3	2.9			2.9	3	2	△5	0	△ 0.3
CY'1972	△4	2	△9	12	△ 0.3					△4	2	△9	12	△ 0.3
CY'1973	△9	2	△8	14	△ 0.2					△9	2	△8	14	△ 0.2
CY'1974	△2	2	△9	9	0					△2	2	△9	9	0
CY'1975	9	5	△12	△3	0					9	5	△12	△3	0
CY'1976	25	5	△23	△8	0					25	5	△23	△8	0
CY'1977	53	6	△45	△12	2					53	6	△45	△12	2
CY'1978	33	6	△27	△11	0					33	7	△27	△11	0
CY'1979	52	7	22	△81	0					52	23	22	△81	0
CY'1980	140	23	6	△116	53					140	36	6	△116	53

구분	배당전손익					계약자배당				당기순이익				
	이자	사차	비차	기타	계	이자	사차	이익배당 준비금	계	이자	사차	비차	기타	계
CY1981	29	36	66	△110	21					29	36	66	△110	21
CY1982	△291	104	127	△24	△84					△291	104	127	△24	△81
CY1983	△357	148	△67	247	△29		15		15	△357	133	△67	247	△44
CY1984	△238	181	△152	293	84		30		30	△238	151	△152	293	54
CY1985	△139	243	△115	97	86		41		41	△139	202	△115	97	45
CY1986	124	221	△75	△44	226		110	81	191	41	111	△75	△42	35
CY1987	902	238	17	△859	298	229	130	△81	278	691	108	17	△796	20
CY1988	2,830	268	95	△ 2,226	967	290	145	107	542	2,595	123	95	△ 2,458	335
CY1989	2,460	354	162	△ 1,687	1,289	426	217	259	902	1,588	91	162	△ 1,531	31
CY1990	1,438	578	460	△ 1,610	866	384	181	42	607	1,215	195	251	△ 1,409	252
CY1991	2,065	778	291	△ 1,940	1,194	812	435	△362	885	1,450	33	197	△ 1,396	284
CY1992	3,208	525	648	△ 1,734	2,647	1,004	451	386	1,841	1,810	74	670	△ 1,950	604
CY1993	3,396	1,012	1,199	△ 2,705	2,902	504	567	770	1,877	2,086	445	1,226	△ 3,036	721
CY1994	4,469	1,667	1,041	△ 5,434	1,913	615	719	△70	1,267	4,096	948	1,075	△ 5,603	516
CY1995	4,274	2,095	△530	△ 4,409	930	565	877	△766	676	4,474	1,218	△500	△ 4,939	253
CY1996	2,888	2,802	598	△ 3,575	2,713	407	840	1,046	2,293	1,434	1,962	598	△ 3,574	420
CY1997	△ 1,553	3,464	1,636	△ 1,620	1,927	542	710	△105	1,147	△ 2,003	2,754	1,636	△ 1,761	626
CY1998	△ 7,434	3,528	1,157	6,900	4,530	2,281	686	138	3,105	△ 9,912	2,842	1,575	6,451	956
합계	18,502	18,301	△21	△ 21,136	22,530	8,116	6,154	1,445	15,715	8,869	11,589	6,676	△ 21,737	5,394

주) 1. 배당전손익은 실적립기준임. 2. 이차배당은 특별배당 포함

□ 교보

구분	배당전손익					계약자배당				당기순이익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이차	사차	이익배당 준비금	계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CY'1958					0									0
CY'1959					0									0
CY'1960					0									0
CY'1961					0									0
CY'1962					0.11									0.11
CY'1963					0.06									0.06
CY'1964					0.01									0.01
CY'1965					0.01	0.01			0.01					0.01
CY'1966					0	0.12			0.12					0
CY'1967					0.09	0.45			0.45					0.09
CY'1968					0.11	1.20			1.20					0.11
CY'1969					0.10	1.84			1.84					0.10
CY'1970					0.13	2.22			2.22					0.13
CY'1971					0	2.25			2.25					0
CY'1972					0									0
CY'1973					0.20									0.20
CY'1974					0									0
CY'1975					0									0
CY'1976					0									0
CY'1977					0									0
CY'1978	7	8	0.6	△14	1					7	8	1	△15	0.5
CY'1979	1	13	23	△32	6					1	13	23	△37	1
CY'1980	12	26	64	△95	7					12	26	64	△100	2
CY'1981	43	60	128	△211	20					43	60	128	△213	18

구분	배당전손익					계약자배당				당기순이익				
	이자	사차	비차	기타	계	이자	사차	이익배당 준비금	계	이자	사차	비차	기타	계
CY1982	△96	86	14	△57	△53					△96	86	14	△59	△55
CY1983	18	128	△88	46	104		16		16	18	112	△88	42	84
CY1984	71	163	△109	126	251		28	205	233	71	135	△109	△83	14
CY1985	135	148	△93	81	271		76	176	252	135	72	△93	△98	16
CY1986	249	131	△58	△59	263		69	136	205	249	62	△58	△205	48
CY1987	906	168	△202	△276	596	213	91	△12	292	693	77	△202	△366	202
CY1988	1,525	270	△73	△209	1,514	254	100	0	354	1,271	70	△73	△524	745
CY1989	999	373	△82	△561	730	368	144	△1	511	335	107	△82	△161	200
CY1990	1,087	288	△293	△480	602	296	122	4	422	788	166	△293	△531	129
CY1991	1,046	259	44	△666	653	582	238	△337	483	128	21	44	△23	169
CY1992	1,546	274	330	△594	1,557	739	264	61	1,064	807	10	347	△823	342
CY1993	1,520	361	453	△769	1,565	402	305	243	950	1,118	56	453	△1,214	413
CY1994	2,206	680	575	△1,762	1,699	456	342	290	1,088	1,750	338	575	△2,189	473
CY1995	2,588	763	297	△2,220	1,428	453	361	97	911	2,135	403	297	△2,318	517
CY1996	2,082	858	413	△2,236	1,017	315	405	△6	714	1,774	452	413	△2,336	303
CY1997	324	1,144	1,402	△1,037	1,834	478	365	△125	718	19	730	1,402	△1,120	1,031
CY1998	△10,555	1,396	506	11,536	2,883	1,136	338	508	2,182	△12,398	1,057	506	11,347	512
합계	5,714	7,597	3,252	411	16,977	5,900	3,264	1,239	10,403	△1,140	4,061	3,268	△1,026	5,165

주) 1. 배당전손익은 실적립기준임. 2. 이차배당은 특별배당 포함



## 생명보험사 공개의 법리

---

1999년 2월 20일 1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10일 1판 2쇄 발행

저자\_양승규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비매품

---